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나.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명확화(안 제5조 제3항)

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종전 신분 경력 인정 기준 조정(안 제5조 제4항)

라. 군 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마.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직위해제 시 직위해제 복직 시 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안 제6조 제2항)

바.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의 근속승진 소요연수 단축 근거 신설(안 제6조의 2 제2항)

사. 근속승진연수 단축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조정(안 제9조 제4항)

아.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 경력 가점 폐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 가점 신설(안 제11조 제1항)

자.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실시 횟수 조정(안 제16조)

차. 순직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최저근무소요연수 적용 예외(안 제41조 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이하 “당해 비위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1) 및 2)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와 불송
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
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
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5조제3항 중 “제1항”을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최근”을 “재임용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근신·영창”을 “근신·군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으로 한
다.

제6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
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또는 적극
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제9조제4항제1호가목 중 “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을 “소방정·소방령·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교·소방사:”를 “소방위·소방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월간

제9조제4항제2호라목 중 “소방장·소방교:”를 “소방장:”으로, “2년간”을 “1년 6월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월간

제11조제1항제3호 중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를 “격무·기피부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
제16조 본문 중 “연2회”를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제5호와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재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생략)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 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2.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u> <u>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u> <u>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위해</u> <u>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u> <u>행위(이하 “당해 비위행</u> <u>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u> <u>1) 및 2)요건에 모두 해당</u> <u>하는 경우</u> <u>1)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u> <u>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u> <u>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경우

가) 징계등 의결 요구권

자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징계등 의결 요구권

자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당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
우와 불송치 또는 불
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
에 따라 유죄가 확정
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
거나 약식명령이 청구
된 사람이 법원의 판
결에 따라 무죄로 확
정된 경우

⑤ ~ ⑧ (생략)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1. 2. (생략)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
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
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영창
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근신·군기
교육-----

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
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
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
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
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
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
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
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생 략)

제6조의2(근속승진) ① (생 략)

<신 설>

4. (현행과 같음)

② -----

----- 휴직
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
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
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
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
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삭제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경력평정) ① ~ ③ (생략)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 평정기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 제7항까지-----

-----.

제9조(경력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가. 소방정·소방령·소방경:

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교 · 소방사: 평정기
 준일부터 최근 3년간
<신 설>

<신 설>

 2. 초과경력
 가. ~ 다. (생 략)
 라. 소방장 · 소방교: 기본경
 력 전 2년간
 마. 소방사: 기본경력 전 1년
 간
<신 설>

 ⑤ (생 략)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
 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
 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
 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
 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
 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나. 소방위 · 소방장: -----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월간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방장: -----
 --- 1년 6월간
 마. 소방교: -----
 -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월
 간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u>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u>연2회</u>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u>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u>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격무·기피부서</u>----- ----- 4. (현행과 같음) 5. <u>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승진심사) ----- ----- <u>연 1회 이상</u> ----- -----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
---	--

등) ①<u>제38조제2항</u>의 규정에 의 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등) ①<u>제38조제1항제5호와 제2 항</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